#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

의 안 번 호 2144 발의연월일: 2020년 11월 일

발 의 자 : 오지훈 의원

## 1. 제안이유

○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제17조)
- 마.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~안 제31조)
-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5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 6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년 11월 17일 ~ 11월 23일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# 7. 부서협의 결과(혁신기획관)

○ (안) 제26조(보고서 제출) 제27조(회계연도 및 결산) 제29조(사업의 평가)의 본문 중 "시장 및 위원회"를 "시장"으로 의견.

☞ 반영 : 의견 수용하여 "시장" 으로 수정

#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속가능발전법」에 따라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"지속가능성"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・사회・경제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(低下)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지속가능발전"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, 사회의 안정과 통합,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.
  - 3. "지속가능발전지표" 란 경제·사회·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 는 수단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 야 한다.
  - 1.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남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2. 시장은 하남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.
  - 3.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,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4. 시민은 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.

###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

- 제4조(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,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
  - 2.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
  - 3.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
  - 4.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· 사회 · 환경의 기본정책 방향
  - 5.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
  - 6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
  -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남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지속가능발전의 현황, 여건변화 및 전망
  - 2.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
  - ④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경제·사회·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할수 있다.
- 제5조(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(이하 "이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
- 2. 지속가능발전 예산 및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
- 3. 그 밖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
- 2.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
- 제6조(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)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 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 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・이행계획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,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지속가능성 보고서) ① 시장은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·공표하여야 한다.
  - 1.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
  - 2.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
  - 3.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
  - ② 시장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하남시 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

- 제8조(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경제·사회·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1. 기본계획, 이행계획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  - 3.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
  - 4.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작성·보완,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·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각 분야 담당 실・국・단・소장으로 한다.
  -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
  - 1. 시민사회단체, 학계,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2.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
  - 3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(이하 "시의원"이라 한다)
  -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-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, 부위원장이 지명한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.

- 제10조(위원 임기) ①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 연임할 수 있다.
  -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위원이 질병치료,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- 2.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- 제12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은 심의·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 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.
  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·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 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·자문에 참여하여 심의·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- 제13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연 1 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개최한다.
 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-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·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16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전문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의 개최,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- 제17조(수당 등)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# 제4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

- 제18조(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

- 2.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
- 3. 하남시 지속가능성 평가 · 모니터링, 보고서 작성
- 4.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교육・홍보, 조사・연구
- 5.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
- 6.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·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
- 7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- 제19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2명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1. 지속가능발전 관련 시 관계 공무원
  - 2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  - 3. 지역주민, 여성, 청소년, 노동계, 상공인, 농업인 등 각계 인사 및 각분야의 전문가
  - ② 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은 임명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되, 임명직 공동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촉직 공동협의회장(이하 "대표협의회장"이라 한다.)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-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위원의 해촉) 대표협의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  -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- 3.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  - 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제21조(기구)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  - 1. 사무국
  - 2. 운영위원회
  - 3. 분과위원회
- 제22조(사무국)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.
  -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-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공동협의회장 2인이 합의하여 추천하고 대표협의회장이 임명한다.
  -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
  - 2.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 · 결산에 대한 사항
  - 3. 총회,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
  - 4. 그 밖에 공동협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- 제23조(운영위원회)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  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시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.
  -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사업계획의 심의
  - 2.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
  - 3.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
  - 4.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
  - 5. 공모사업의 심의 결정
  - 6.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
  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24조(분과위원회)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.

#### 제25조(총회 등)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공동협의회장,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
-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협의회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1. 대표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3.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4. 공동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경우
- 5.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- 제26조(보고서 제출) ① 협의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연1회 시장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년도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7조(회계연도 및 결산) 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②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28조(감사)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감사로 둔다.
  -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사업의 평가)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, 정기총 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0조(경비의 지원 및 정산)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협의회의 운영비
  - 2.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
 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  - ②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.
- 제31조(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5장 보칙

- 제32조(조사·연구 의뢰)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, 지속가능 발전 지표 작성,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,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, 시민단체,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조사·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33조(교육·홍보 등)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위임·위탁)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- 제35조(국내외 협력 등)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기업·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3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하남시 환경기본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(시민참여 등) 제2항을 삭제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하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